

1. 개정이유

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원 업무의 효과적·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정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‘운용성 향상 지원사업’ 관련 성능개량 업무지침 규정 근거 마련 (안 제19조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)

- 1) 방사청은 「방위사업법」 제22조(성능개량)에 근거하여, 운용중인 무기 체계의 단순한 개량사항 조치를 위해 통합예산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설('20.9월)하여 운영 중이며, 사업 중요성 및 규모 확대를 고려해 사업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
- 2)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운용성 향상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사업 선정 및 관리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나.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·중개업 신고 서류 간소화 (안 제56조제1항, 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)

- 1) 현재 방위사업법령상에 따라 수리하고 있는 ‘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·중개업’ 신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,
- 2)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 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기준, 사업 선정, 사업 배분 및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·중개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5일
상 호				
연락처	전화번호	팩스번호		
대 표 자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		

「방위사업법」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·중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장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방위사업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·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2.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*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중개업·수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생략 가능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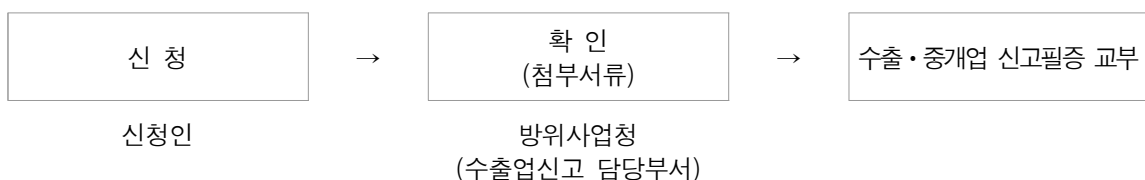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성능개량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(성능개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기준, 사업 선정, 사업 배분 및 관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.</u>
제56조(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) ①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·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,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·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<u>제2호 및 제3호</u> 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<u>1.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</u> <u>2.·3. (생략)</u> <u><신 설></u>	제56조(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호 및 제2호</u> ----- ----- <u><삭 제></u> 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 <u>②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신고</u>

② ~ ⑥ (생략)	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「전자 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 출하도록 해야 한다. 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